

XpERP 를 이용한 2023년 연말정산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참고 사이트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상담센터 →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 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 합니다.

- **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 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1. 식대 비과 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전	개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전	개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thead><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head><tbody><tr><td>1,200만원 이하</td><td>6%</td></tr><tr><td>1,200만원 ~ 4,600만원 이하</td><td>15%</td></tr><tr><td>4,600만원 ~ 8,800만원 이하</td><td>24%</td></tr><tr><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td>35%</td></tr><tr><td>1.5억원 ~ 3억원 이하</td><td>38%</td></tr><tr><td>3억원 ~ 5억원 이하</td><td>40%</td></tr><tr><td>5억원 ~ 10억원 이하</td><td>42%</td></tr><tr><td>10억원 초과</td><td>45%</td></tr></tbody></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과세표준 조정 <table><thead><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head><tbody><tr><td>1,400만원 이하</td><td>6%</td></tr><tr><td>1,400만원 ~ 5,000만원 이하</td><td>15%</td></tr><tr><td>5,000만원 ~ 8,800만원 이하</td><td>24%</td></tr><tr><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td>35%</td></tr><tr><td>1.5억원 ~ 3억원 이하</td><td>38%</td></tr><tr><td>3억원 ~ 5억원 이하</td><td>40%</td></tr><tr><td>5억원 ~ 10억원 이하</td><td>42%</td></tr><tr><td>10억원 초과</td><td>45%</td></tr></tbody></table>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9조)

현행	개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 총급여 \times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 총급여 \times 1/2), 50만원\}$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 총급여 \times 1/2), 20만원\}$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5.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전	개정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 통보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9.지급영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영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적용시기>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 재단에 대한 기부금 추가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1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감면한도 확대 연간 200만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종전	개정
○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좌 동)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좌 동)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16.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7.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8.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9.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0.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전	개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table><tr><th>구 분</th><th>공제율</th></tr><tr><td>① 신용카드</td><td>15%</td></tr><tr><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tr><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td>30%</td></tr><tr><td>④ 전통시장</td><td>40%</td></tr><tr><td>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td>40% (80%)</td></tr></table>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table><tr><th>구 분</th><th>공제율</th></tr><tr><td>① 신용카드</td><td>15%</td></tr><tr><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tr><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td><td>30% (40%)</td></tr><tr><td>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td><td>40% (50%)</td></tr><tr><td>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td>40% (80%)</td></tr></table>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1.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2.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23.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전	개정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제 등

(소득세법 제164의3, 소득세법 제164조)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연제

(적용대상)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준비서류 안내

수집서류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정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부양가족이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중)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영수증 제출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에 제출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 단지관리

✓ 단지정보

단지정보등록

동호생성

세대검침환경등록

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세금계산서/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전자(세금)계산서 회원가입 이용가이드
조회
저장
삭제
복사

* 정산년도
2023
년
복사

* 사업자등록번호	1208614122		
* 상호	NEW XpVOTE 관리사무소	* 업태/종목	06 비영리법인 서비스
* 대표자명	김대표	* 법인등록(주인)번호	
간접관리번호		* 연금행정구역	
* 사업장소재지	08506 우편번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017호	
사업장기호		* 사업장유선전화번호	02-1566-5643 유선전화번호는 -로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ex) 02 - 123 - 4567
* 업무담당자	이업무	담당자부서	
* 담당자 연락처	010-1234-5678 전화번호는 -로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ex) 02 - 123 - 4567	* 담당자이메일	XpVOTE@naver.com
세무서코드	119 금첨세무서	* 세액단위계산법	절하 ※ 연말정산에만 반영,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
전산매체 제출승인일		분기별 납부승인일	

세무서코드보기

- 단지관리>단지정보>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메뉴에서 정산년도 2023년으로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 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메뉴는 급여(원천징수이행신고서, 퇴직정산서, 연말정산 등)의 신고자 정보에 해당되므로 꼭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 (모든 내용이 전년과 동일 할 경우 복사버튼을 누르면 같은 내용이 복사됩니다.)
- ✓ 연말정산 시 세무서코드와 세액단위계산법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 세무서 코드는 세무서코드보기를 눌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 회계 또는 인사/급여 메뉴의 쓰기/저장 권한이 있어야 수정 및 저장 가능합니다.

 인사/급여

전직장내역등록

- 종전 근무지가 4곳 이상인 경우 **종전근무지4**에 총 급여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합니다.

9

3. 연근로소득내역등록

인사/급여

연말정산

연근로소득내역등록

연근로소득내역등록 사용방법 및 예라리 따라하기 조회 저장 삭제

년도: 2023 년 부서: 전체

사번	성명
000001	홍길동
000002	고길동
000003	강감찬
000004	이중간
000005	안청년

부서	관리실	급여	49,200,000	소득세	2,541,720
직위	관리행정(관리과장)	상여	0	지방소득세	254,160
입사일	2021.01.01	급여합계	49,200,000	고용보험	442,800
퇴사일		비과세	2,400,000	국민연금	2,214,000
주민번호	750101-1234567	삭제	2,400,000	건강보험	1,967,400
				아간근로	0

※ 청소, 경비 근로자에 한하여 아간, 연장, 휴일수당 등은 연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여부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01	4,100,000	0	4,100,000	200,000	224,310	22,430	36,900	163,950
02	4,100,000	0	4,100,000	200,000	224,310	22,430	36,900	163,950
03	4,100,000	0	4,100,000	200,000	209,310	20,930	36,900	163,950
04	4,100,000	0	4,100,000	200,000	209,310	20,930	36,900	163,950
05	4,100,000	0	4,100,000	200,000	209,310	20,930	36,900	163,950
06	4,100,000	0	4,100,000	200,000	209,310	20,930	36,900	163,950
07	4,100,000	0	4,100,000	200,000	209,310	20,930	36,900	163,950

연근로소득내역등록 저장 닫기

정산년도: 2023 년 급여년월: 01 월 ~ 12 월

부서: 전체 사번: 000001 ~ 999999

❖ 2023년에 계산된 급여를 월별로 수신 하는 메뉴입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원정보를 조회합니다.
- 사원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면 2023년에 계산된 급여가 표기됩니다.
- 연급여수신 버튼을 클릭하여 전 직원의 급여를 수신 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후 급여금액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내역이 없을 경우 최종 월분에 총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연급여수신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를 재 수신하는 경우 입력한 급여 금액은 초기화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금액은 건강보험 + 장기요양 보험 금액입니다.

3. 연근로소득내역등록

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설정 시

지급공제	항목명	항목코드	출력순서	사용여부	상여포함	과세대상	일수계산	월차계산	연말정산	퇴직정산	비과세한도
지급	제수당	제수당	3	☑	☐	☑	☑	☐	☑	☑	0
지급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4	☑	☐	☑	☑	☐	☑	☑	200,000
지급	방화수당	방화관리사	5	☑	☐	☑	☑	☐	☑	☑	0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1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2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3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4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5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 인사/급여>공통정보관리>급여기초정보 메뉴에서 항목코드 야간근로수당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화, 경비직일 경우 설정 합니다.>

① 과세대상 V체크 + 비과세한도 금액 입력

- 연말정산>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서 야간근로에 금액 표기 되고, 비과세에도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중 연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단,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 노무직만 적용되며, 관리직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② 야간근로수당 과세 설정 시

지급공제	항목명	항목코드	출력순서	사용여부	상여포함	과세대상	일수계산	월차계산	연말정산	퇴직정산	비과세한도
지급	제수당	제수당	3	☑	☐	☑	☑	☐	☑	☑	0
지급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4	☑	☐	☑	☑	☐	☑	☑	0
지급	방화수당	방화관리사	5	☑	☐	☑	☑	☐	☑	☑	0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1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2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3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4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5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 인사/급여>공통정보관리>급여기초정보 메뉴에서 항목코드 야간근로수당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직인 경우 설정 합니다.>

연말정산>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서 야간근로 및 비과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근로소득내역등록

직원이 지역가입으로 납입한 국민연금금액을 합산 요청 하였습니다. 어디에 금액을 등록 하나요?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서 국민연금칸에 금액을 국민연금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 하여 주세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 소득세 집행기준 52-0-1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예,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부양가족등록)

인사/급여

연말정산

개인공제자료등록

조회

저장

년도: 2023 년 부서: 전체 조회후 찾기

사번	성명
000001	홍길동
000002	고길동
000003	강감찬
000004	이종간
000005	안형년

기본정보

입력할 항목	해당여부	공제조건 및 입력방법
과세대상급여	49,200,000 원	연간 급여 총액
과세대상상여	0 원	연간 상여 총액
기납부세액	2,541,720 원	매월 원천징수된 갑근세 기재, 주민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야간근로수당	0 원	비과세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연 240만원 한도(경비, 미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PDF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PDF파일 업로드(암호 없는 파일만 가능) | 파일 선택 | 선택된 파일 없음 | 자료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간소화 자료만 업로드 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등은 업로드 안됩니다)

삭제	관계 코드	내외 코드	성명	주민번호	부양	인적공제									
						기본공제	세대주	종교관련 공제	부녀자	한부모	장애	경로우대	자녀	출산	입양
☒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Y	☒	☒	☐	☐	☐	☒	☐	☐	☐	☐
☒	배우자	내국인	홍부인	810101-****...	Y	☒	☐	☐	☐	☐	☐	☐	☐	☐	☐
☒	본인직계존속	내국인	고부친	42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영수	00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철수	05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둘리	170101-****...	Y	☒	☐	☐	☐	☐	☐	☐	☐	☐	☐
☒	배우직계존속	내국인	홍장인	600101-****...	Y	☒	☐	☐	☐	☐	☒	☐	☐	☐	☐
합계															

❖ 개인공제자료등록은 근로자의 가족사항 및 추가공제사항, 공제받을 금액 등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 연말정산을 작업할 사원을 클릭하면, 연근로소득내역에서 저장한 과세대상급여, 과세대상 상여 기납부세액, 야간근로수당등이 나타납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직장내역 입력 한 사원의 급여 및 세액은 전직장내역 +연근로소득내역에 등록된 금액으로 표기 됩니다.

- PDF등록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가 일치하는 정보만 업로드 됩니다.
- 교육비는 자료 등록 후 교육비 구분을 선택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PDF 가족정보와 부양가족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금액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간소화자료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본 x

4. 개인공제자료등록 (부양가족등록)

부양가족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자세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 해 주세요.

가족사항 입력 주의사항 보기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7세이상 ~ 만20세 이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공제대상 아님)
★ 모든 인적공제 기준은 출생일 기준이 아닌 출생년도 기준입니다.(국세청 기준에 따름)

삭제	관계 코드	내외 코드	성명	주민번호	부양	인적공제									
						기본공제	세대주	종교관련 종사	부녀자	한부모	장애	경로우대	자녀	출산 입양	
☒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Y	☒	☒	☒	☒	☒	☒	☒	☒	☒	☒
☒	배우자	내국인	홍부인	810101-****...	Y	☒	☒	☒	☒	☒	☒	☒	☒	☒	☒
☒	본인직계존속	내국인	고부친	42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영수	00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철수	05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둘리	170101-****...	Y	☒	☒	☒	☒	☒	☒	☒	☒	☒	☒
☒	배우직계존속	내국인	홍장인	600101-****...	Y	☒	☒	☒	☒	☒	☒	☒	☒	☒	☒
합계															

삭제	관계 코드	내외 코드	성명	주민번호	부양	인적공제									
						기본공제	세대주	종교관련 종사	부녀자	한부모	장애	경로우대	자녀	출산 입양	
☒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Y	☒	☒	☒	☒	☒	☒	☒	☒	☒	☒
☒	배우자	내국인	홍부인	810101-****...	Y	☒	☒	☒	☒	☒	☒	☒	☒	☒	☒
☒	본인직계존속	내국인	고부친	42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영수	00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철수	050101-****...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내국인	고둘리	170101-****...	Y	☒	☒	☒	☒	☒	☒	☒	☒	☒	☒
☒	배우직계존속	내국인	홍장인	600101-****...	Y	☒	☒	☒	☒	☒	☒	☒	☒	☒	☒
합계															

- 부양가족 정보는 **인사/급여 > 인사관리 > 인사기본정보** 메뉴의 가족사항에 등록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 가족 사항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단 **행추가**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대상 요건에 맞춰 인적 공제 구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코드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X	X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이상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주거 형평상 별거 인정) 해외 거주는 제외	소득금액 연간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포함)	20세이하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X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20세이하 or 60세 이상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이하 (조건부 연장 가능)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초생활수급자	X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부양가족 대상 요건 (추가공제대상)	요건	특이사항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 중복불가
한부모	- 배우자가 없음 (남성, 여성 모두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중복불가
장애	소득세법 장애인	
경로	70세 이상 (53.12.31.이전)	
자녀	8세 이상의 자녀	
출산입양	당해년도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4. 개인공제자료등록 (부양가족등록)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자세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 해 주세요.

가족사항 입력 주의사항 보기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7세이상 ~ 만20세 이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공제대상 아님)
★ 모든 인적공제 기준은 출생일 기준이 아닌 출생년도 기준입니다.(국세청 기준에 따름)

초기화 **등록가**

삭제	관계 코드	내외 코드	성명	주민번호	부양	인적공제									
						기본공제	세대주	종교관련 종사	부녀자	한부모	장애	경로우대	자녀	출산 입양	
☒	▼ 본인	▼ 내국인	고길동	750101-****...	Y	☒	☒	☐	☐	☐	☒	☐	☐	▼	
☒	▼ 배우자	▼ 내국인	홍부인	810101-****...	▼ Y	☒	☐	☐	☐	☐	☐	☐	☐	▼	
☒	▼ 본인직계존속	▼ 내국인	고부친	420101-****...	▼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 내국인	고영수	000101-****...	▼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 내국인	고철수	050101-****...	▼ Y	☒	☐	☐	☐	☐	☐	☐	☒	▼	
☒	▼ 비속자녀(자녀/입양)	▼ 내국인	고돌리	170101-****...	▼ Y	☒	☐	☐	☐	☐	☐	☐	☐	▼	
☒	▼ 배우직계존속	▼ 내국인	홍장인	600101-****...	▼ Y	☒	☐	☐	☐	☐	☒	☐	☐	▼	
합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 개인공제자료 등록 초기화 버튼 클릭시 가족구성원의 인적공제 및 금액정보는 초기화 되어 새로 기입 되어야 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입양은 당해년도 출생자일 경우 체크 합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보험료 및 연금계좌)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보험료를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본인	고길동	1,242,690	1,962,000	2,545,170	259,200	0	0
배우자	홍부인	1,722,730	0	0	0	0	0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철수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둘리	489,872	0	0	0	0	0
합계		3,455,292	1,962,000	2,545,170	259,200	0	0

연금보험료공제

국인연금보험료	총(전)근무지	보험료	0	원	전액	
	총(전)근무지	보험료	1,140,610	원	전액	
	공적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군인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공적연금보험료 계		0	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인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전)근무지	2,545,170	원	전액
	고용보험	총(전)근무지	259,200	원	전액

그밖의 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년경인 가입)	납입금액	6,060,000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7,500,000	원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액)	보험료	0	원
	퇴직연금(납입액)	보험료	5,339,527	원
	연금저축(납입액)	보험료	5,466,680	원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3,455,292	원
장애인보장성보험	보험료	1,962,000	원

①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건강 | 보험료고용 금액은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 등록 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② 보험료 보장성 금액 및 보험료 장애인 금액란에는 제출자료를 확인하여 각 사용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입력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보험료 총액이 하단 보험료금액란에 자동으로 합산 표기 됩니다.

✓ 연근로소득내역에 보험료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공제한 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 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보험료 및 연금계좌)

Q . 보험료 탭의 부양가족별 금액과 항목별(건강보험료) 입력 금액을 확인 해주세요. 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 . 개인공제자료등록에서 저장 후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 발생 합니다.
보험료 탭의 상단의 국세청자료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금액을 수정 후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건강보험 금액과 고용보험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금액과 상이 합니다.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보험료 정산시기 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실제 보험료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출한 연금보험료 금액 등이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 20 세 이하인 자녀가 2023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 가능한지?

A . 예,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Q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A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Q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두리누리 지원금 받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두리누리지원금 포함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표기되는데 두리누리 지원금 금액까지 공제 가능한지?

고용보험 사회지원금은 아래 관련해석사례에 따라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인 고용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 금액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차감후 입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천, 서면법규과-1491 , 2012.12.14.

A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2012.7.1.)로 고시되어 시행 중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52 조제1 항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보험료 및 연금계좌)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보험료를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본인	고길동	1,242,690	1,962,000	2,545,170	259,200	0	0	0
배우자	홍부인	1,722,730	0	0	0	0	0	0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철수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둘리	489,872	0	0	0	0	0	0
합계		3,455,292	1,962,000	2,545,170	259,200	0	0	0

1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원	전액
	종현근무지	보험료	1,140,610	원	전액
공적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군인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공적연금보험료 계		0	원	

2 그밖의 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년전 가입)	납입금액	6,060,000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7,500,000	원

•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액	보험료	0	원
	퇴직연금(납입액)	보험료	5,339,527	원
	연금저축(납입액)	보험료	5,466,680	원
	ISA계좌 만기 시 퇴직연금 계좌 추가 납입액	보험료	0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 추가 납입액	보험료	1,676,207	원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연금계좌 자료는 보험료 탭 하단 연금계좌 항목에 직접 금액을 입력 합니다.

①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 등록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② 개인연금저축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을 등록 합니다.

③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 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 형 (DC형) 퇴직 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 등 회사 부담액 제외)
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 * 전환 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한도 확대) * 연금 계좌 납입 한도 초과시에만 적용

4. 개인공제자료등록 (주택자금 및 월세액)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6,723,968	원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0	원	
	2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0	원	600만원 한도	
			15년 ~ 29년	0	원	1000만원 한도	
			30년 이상	0	원	1500만원 한도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0	원	1500만원 한도
			기타대출		5,000,000	원	500만원 한도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처상환 대출	0	원	1800만원 한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1,770,512	원	1500만원 한도
					기타대출	0	원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0	원	300만원 한도

• 그밖의 공제 주택마련저축은 본인이 세대주일때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 세대주 체크 후 입력해주세요.

3	청약저축	납입금액	0	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1.01 이후 가입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15.01.01 이전 가입자인 경우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0	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0	원	

• 세액공제

4	종합공제	공제세액	0	원	종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적용기간: 24.12.31)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0	원	5.5천만원 이하 12% 5.5초과/7천만원 이하 10%
외국납부	국외납부세액	납부세액	0	원	
	국외 총급여	총급여	0	원	
5	월세액	지출액	12,000,000	원	5.5천만원 이하 12% 5.5초과 / 7천만원 이하 10%

-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 2023년12월31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단 실거주)
원리금상환액거주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지만 가능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 : 2023년12월31일 기준 1주택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단 실거주)
- 주택마련저축**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1~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 세액
(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

4. 개인공제자료등록 (주택자금 및 월세액)

•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6,723,968	원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0	원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0	원	600만원 한도
			15년 ~ 29년	0	원	1000만원 한도
			30년 이상	0	원	1500만원 한도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1500만원 한도
			기타대출	0	원	500만원 한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1800만원 한도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770,512	원
			기타대출	5,000,000	원	500만원 한도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자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우리은행	201-81-02819	1320400123456	2012-05-31	1,515,720
(주)국민은행	201-81-68693	64800901234567	2017-08-26	3,223,401
(주)국민은행	201-81-68693	64800901234568	2018-07-28	1,904,049
합계				6,723,968

• 그밖의 공제 주택마련저축은 본인이 세대주일때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세대주 체크 후 입력해주세요.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1,200,000	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1,800,000	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000,000	원

출 금액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1.01 이후 가입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15.01.01 이전 가입자인 경우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자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 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환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정당결 정액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S.K종합공사 (209-06-29912)	해당월을 (주택자금대출(주 택구입자금대출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2019-08-31 2039-08-31	20년	2021-08-30	1,770,512	1,770,512	
		25,000,000	0	25,000,000	7,167,652	5,000,000	
농협은행 주식회 (104-86-39742)	해당월을 (주택자금대출	2015-05-15 2035-05-15	20년	2022-01-02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 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OO 은행 (617-19-68038)	43180795112345	청약저축	청약저축	1981-05-28	1,200,000
디자인 이상 (209-06-32493)	52710797123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2-06-16	600,000
우림 (310-06-89734)	36591006512345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05-12	1,200,000
합계					3,000,000

4. 개인공제자료등록 (주택자금 및 월세액)

Q.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A. 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Q.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A.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신용카드등)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권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1-3월	4-12월	1-3월	4-12월	1-3월	4-12월	1-3월	4-12월	1-3월	4-12월	대중교통
본인	홍부인	12,551,657	856,310	405,8	25,000	229,000	197,240	2,134,520	0	382,610	170,830	6,172,900	2,519,120		
배우자	홍부인	0	1,540,761	2,510,460	0	0	1,065,420	3,073,840	0	225,500	244,123	1,055,634	461,250		
본인	계존속	고부친	0	1,600,000	0	0	0	0	0	0	0	94,830	110,500	0	
비속자	녀자...	고영수	0	2,940,000	0	0	0	2,000,000	6,000,000	0	0	0	0	0	
비속자	녀자...	고철수	0	0	144,354	0	0	0	0	0	0	62,723	0	765,220	
합계		23,042,784	14,721,045	3,068,401	173,100	528,550	3,262,660	11,208,360	0	608,110	829,016	7,749,988	4,852,440		

항목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제외)	신용카드(1)
	23,042,784 원
	14,721,045 원
	3,068,401 원
	173,100 원
	528,550 원
	3,262,660 원
	11,208,360 원
	0 원
	608,110 원
	829,016 원
	7,749,988 원
	4,852,440 원
	70,044,454 원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길동	750101-1234567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12,551,657	480,000	83,540	254,000	13,369,197
1월~3월	3,510,610	66,000	7,570	25,000	3,609,180
4월~12월	9,041,047	414,000	75,970	229,000	9,760,017

(단위: 원)

구분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일반	8,067,017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전통시장	78,000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대중교통	83,540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도서공연	74,0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4,484,64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402,0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	180,000
인별합계금액				13,369,197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 합니다.

입력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구분으로 집계되어 표기 됩니다.

- ✓ 신용카드/ 직불(선불)/현금영수증 구분에 맞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도서공연/전통시장은 1월~3월 /4월~12월 금액을 구분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합니다.
-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신용카드등)

Q. 작년 연말정산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3년에는 공제대상항목에서 사라진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포함)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삭제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A.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A.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간소화에 조회된 현금영수증 금액이 - 금액입니다. - 금액으로 등록하나요?

A. (-)금액이 이전 과세연도의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취소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시에서는 제외(0원)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의료비)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기부금 기타

의료비 사용금액을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의료비 일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	의료비 장애인,65세이상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일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	의료비 장애인,65세이상	실손의료보험금
본인	홍길동	364,730	0	0	0	0	0	0	0	0	
본인지계존속	홍아빠	0	0	0	2,716,440	1,000,000	0	0	0	0	
배우자	김배우	2,076,660	0	1,000,00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149,100	0	0	0	0	0	0	0	0	
합계		2,590,490	0	1,000,000	2,716,440	1,000,000	0	0	0	0	

의료비의 항목별 합계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	대상금액
난임시술비	1,000,000 원	1,000,000 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0 원	0 원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3,081,170 원	2,081,170 원
그밖의 공제대상자	2,225,760 원	2,225,760 원
실손의료보험금	1,000,000 원	보전액 1,000,000 원
의료비계	5,306,930 원	대상금액계 5,306,930 원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금액을 등록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면 의료비에서 제외 후 공제대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합니다

Q.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한쪽으로 몰아주기 가능 한가요?

A.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본인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내분의 의료비를 남편분이 지출한 경우라면 남편분이 아내분의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아내분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남편분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교육비)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관계 코드	성명	교육비(국세청 또는 그밖의 자료 교육비에 총금액 입력)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1 교육비 구분	공납금 (일반)	교복비	체험학습비	교육비 일반	교육비 장애인	교육비 일반	교육비 장애인
본인	고길동	본인	13,661,705	0	0	13,661,705	0	0	0
배우자	홍부인	대학생	102,000	0	0	102,000	0	0	0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해당없음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대학생	10,393,600	0	0	10,393,60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철수	초중고	157,300	987,000	153,480	1,297,78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둘리	초중고	3,647,360	0	0	3,647,360	0	0	0
합계			27,961,965	987,000	153,480	29,102,445	0	0	0

• 세액공제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 포함)	13,661,705 원	전액
	취학전 아동	유치원 학원등	0 명 0 원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공납금+교복비+체험학습비	2 명 4,945,140 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공납금	2 명 10,495,600 원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0 명 0 원	전액
	교육비계		29,102,445 원	

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 합니다.

교육비 등록시 교육비 구분을 선택 후 금액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업로드시 교육비 구분은 업로드 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구분을 직접 선택한 후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육비 총금액 (녹색입력칸) 과 국세청자료와 그 밖의 자료의 합이 동일 하여야 합니다.

$$\text{공납금 (일반)} + \text{교복비} + \text{체험학습비} = \text{교육비 일반}$$

$$151,300 + 987,000 + 153,480 = 1,297,780$$

별도로 등록 시 교육비 일반에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합니다.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 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공제자료등록 (기부금)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당해년도 기부금	당해년도 기부금
본인	고길동	295,000	0
배우자	홍부인	26,000	0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철수	1,200,00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둘리	0	0
합계		1,571,000	0

- ① 상단 국세청 자료 당해년도 기부금란에 기부금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 ② 기부유형을 확인 후 하단 당해년도기부금에 기부유형에 맞게 금액을 각각 등록합니다.

- ✓ 정치자금기부금
- ✓ 고향사랑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2

정치자금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5,000 원

원

고향사랑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80,000 원

원

특례기부금

2023년 1월분(소득공제)

0 원

원

당해년도기부금

50,000 원

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당해

2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당해

20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길동	750101-123456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정려금 신청금액
-*-*****1		정치자금기부금	10,000	5,000	5,000
108-82-05789	사회복지법인 한국 컴패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10,000	210,000	0
408-83-00944	화순군청(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금	80,000	80,000	
인별합계금액					295,000

4. 개인공제자료등록 (이월기부금)

인사/급여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자료등록

년도 | 2022 년 부서 | 전체

사번 | 100000 | 성명 | 고길동

200000 | 홍길동

기부금

개인공제자료의 기부금

기부금 조정내역 (자동으로 이월된 기부금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잘못 이월된 경우 기부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세요.)

해당년도 공제금액 | 0

계산하기 | 행추가

삭제	기부년도	기부구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원금액	공제 대상금액	해당년도 공제금액	공제받지 못한 금액	
		유형	코드					소멸금액	이월금액
☐	2022	종교	41	100,000	0	100,000	0	0	100,000

개인공제자료의 이월 기부금

특례기부금	2013년도 이전 이월액	2013년도 이후 이월액
일반기부금(종교)	0	0
일반기부금(종교)	0	0
일반기부금(종교)	0	0
기타기부금	0	0

① 이월기부금은 연말정산 2022년 기부금공제자료등록페이지를 확인 후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등록 전 기부금공제자료등록 메뉴에서 2022년도 조회 후 이월기부금 내역이 있는 사원은 기부년도와 유형 및 이월기부금을 확인 후

개공제자료등록의 기부금 입력시 이월분 항목에 금액을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5,000	원
	고향사랑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80,000	원
	특례기부금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	원
		당해년도기부금	50,000	원
		2022년이월분	0	원
		2021년이월분	0	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210,000	원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	원
		당해년도기부금	1,200,000	원
		2022년이월분	0	원
		2021년이월분	0	원
	일반기부금(종교단체)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	원
		당해년도기부금	0	원
		2022년이월분	100,000	원
		2021년이월분	0	원

4. 개인공제자료등록 (기타)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 그밖의 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2020년 출자·투자분	벤처	출자·투자금액	0	원		
		조합1	출자·투자금액	0	원		
		조합2	출자·투자금액	1,200,000	원		
	2021년 출자·투자분	벤처	출자·투자금액	0	원		
		조합1	출자·투자금액	0	원		
		조합2	출자·투자금액	1,000,000	원		
	2022년 출자·투자분	벤처	출자·투자금액	0	원		
		조합1	출자·투자금액	0	원		
		조합2	출자·투자금액	118,698	원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2,318,698	원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0	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6,000,000	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500,000	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0	원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면기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70%	0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0	원				

- 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해당 내역에 포함되는 사원은 해당항목에 금액을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집합투자저축 소득공제	처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누리집) →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책자)	

4. 개인공제자료등록 (기타)

Q. 2023.11월 축탁전환시 60세 이상 입사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

A. 2014.1.1.이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취업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감면대상자로 급여계산 시 감면을 받고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기간과 총 급여액을 등록하여 정산을 해야 되나요?

A. 이미 감면대상자로 매월 급여계산시 감면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기간과 총급여액을 등록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중소기업 감면 대상자 이나 회기 중에 신청하지 않고, 연말 정산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회기 중에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회사에서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재직 중 근로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A.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작업

인사/급여

연말정산

연말정산작업

❖ 연말정산작업은 전직장내역, 연근로소득내역, 개인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하는 메뉴입니다.

정산년도	2023년				
정산대상	☐ 전체 ☒ 부분	부서	전체	사번	000001 - 000001
재직구분	전체	퇴사일자			
		정산작업			

- ① 전 직원의 연말정산 작업을 할 경우 정산대상과 재직구분을 전체로 놓고 정산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재직자 또는 퇴사자만 정산 작업을 하고 싶다면 재직구분을 재직자 또는 퇴사자로 선택한후 정작업을 클릭합니다. (퇴사자만 정산 할 경우 퇴사일자를 함께 입력합니다.)
- ③ 특정 직원만 정산하고자 할 경우 정산대상을 부분으로 선택한 후 오른쪽에 해당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고 정산작업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작업 합니다.

6. 의료비공제자료등록

인사/급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자료등록

❖ 의료비 공제 받은 사원의 공제 자료를 입력 하는 메뉴입니다.

의료비를 입력한 사원이 아닌 입력한 의료비를 통해 세액이 공제된 사원만 등록 합니다.

조회 저장 인쇄

년도 | 2023 년 부서 | 전체

납입금액 5,190,500

행추가

사번	성명	의료비공제대상자	내/외국	지급코드	기관명	사업자번호	건수	금액	납입시술비 해당 여부	미숙아선정성이상아 해당 여부	
100000	고길동	주인등록번호	본인여부	내/외국	지급코드	기관명	사업자번호	건수	금액	납입시술비 해당 여부	미숙아선정성이상아 해당 여부
200000	홍길동	□ 810401-*****	본인	내국인	▼ 1	국세청자료	000-000-0000	1	2,598,000		
		□ 820201-*****	본인	내국인	▼ 1	국세청자료	000-000-0000	1	2,592,500		
									5,190,500		

의료증빙코드 내역

- 1: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2: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3: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5:기타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공제자료등록 페이지에서 조회 시 조회되는 사원은 의료비 공제 자료를 추가 등록 하여야 합니다.

입력할 사원을 선택 후 행추가 하여 의료비 제출자료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코드는 아래의 의료증빙코드를 확인 후 선택하여 주세요.

② 상단 납입금액과 입력한 총 금액이 동일 한지 확인 하시지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및 사업자 번호 등록 시 숫자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7. 기부금공제자료등록

인사/급여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자료등록

❖ 기부금 자료가 등록된 사원의 기부금 상세 자료를 입력 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저장

인쇄

년도

2023

년

부서

전체

행추가

사번	성명	삭제	유형	코드	내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간수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공제 대상금액	관계	구분	납부자명	납부자주민번호
100000	고길동	☐	법정	10	금전	116-82-14426	사회복지공동기...	1	50,000	0	50,000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1234567
200000	홍길동	☐	정치	20	금전	***-**-*****	*****2	1	27,000	0	27,000	배우자	내국인	홍부인	810101-2234567
		☐	지정	40	금전	214-82-08077	재단법인대한번...	1	1,410,000	0	1,410,000	직계비속	내국인	고철수	050101-3234567

• 개인공제자료의 당해 기부금

법정	50,000	정치	27,000
지정	1,410,000	종교	0
우리사주	0		

• 기부금 조정내역 (자동으로 이월된 기부금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잘못 이월된 경우 기부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세요)

해당년도 공제금액 0

삭제	기부년도	유형	코드	기부금액	전년도까지 공제된금액	공제 대상금액	해당년도 공제금액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	2021	종교	41	450,000	0	450,000	0	0	0	450,000
☐	2022	법정	10	50,000	0	50,000	0	0	0	50,000
☐	2022	정치자금	20	27,000	0	27,000	0	27,000	0	0
☐	2022	지정	40	1,410,000	0	1,410,000	0	0	0	1,410,000

• 개인공제자료의 이월 기부금

법정기부금	2013년도 이전 이월액	0	2014년 이후 이월액	0
지정기부금(종교외)	2013년도 이전 이월액	0	2014년 이후 이월액	0
지정기부금(종교)	2013년도 이전 이월액	0	2014년 이후 이월액	450,000
기타 기부금		0		0

기부금 공제자료등록 페이지에서 조회 시 조회되는 사원은 기부금 자료를 추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① 조회된 사원을 선택 후 오른쪽 화면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개인공제자료의 당해 기부금을 확인 후 해당 내역에 맞는 기부내역을 등록하기바랍니다. 등록 후 저장 시 아래 기부금 조정내역에 당해 공제받은금액과 이월금액이 구분되어 등록 됩니다.
- ②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 유형에 맞게 이월 기부내역을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공제자료등록의 기부금 탭에도 해당 년도에 이월기부금을 등록해야 함)

7. 기부금공제자료등록

당해년도 기부금

사업자 및 주민등록번호는 * 또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는 입력하지 마세요.)

행추가

삭제	기부구분						건수	기부금액	가...	공제대상금액	기부자			
	유형	코드	내용	사업자(주민)등록...	성호(성명)	관계					구분	납부자명	납부자주민번호	
☐	특례	10	금전	116-82-14426	사회복지공동모금	1	50,000	0	50,000	직계존속	내국인	홍장인	600101-*****	
☐	정치	20	금전	***_*_*****	*****1	1	50,000	0	50,000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	일반	40	금전	214-82-08077	재단법인 대한법률법률...	1	1,200,000	0	1,200,000	직계비속	내국인	고철수	050101-*****	
☐	우리	42	금전	108-82-05789	사회복지법인한국컴패션	1	210,000	0	210,000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	고향	43	금전	408-83-00944	화순군청(고향사랑)	1	80,000	0	80,000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개인공제자료의 당해 기부금

법정	50,000	정치	5,000
자정	1,200,000	종교	26,000
우리사주	210,000	고향사랑	80,000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길동	750101-123456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	*****1	정치자금기부금	10,000	5,000	5,000
108-82-05789	사회복지법인 한국 컴패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10,000	210,000	0
408-83-00944	화순군청(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금	80,000	80,000	0
인별합계금액			295,000		

성명	주민등록번호
홍장인	600101-123456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16-82-14426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특례(법정)기부금	50,000	50,000	0
인별합계금액			50,000		

■ 기부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철수	050101-323456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14-82-08077	재단법인 대한법률 법률구조재단	종교단체외일반(자정)기부금	1,200,000	1,200,000	0
인별합계금액			1,200,000		

8. 월세액/주택임차등록

인사/급여

연말정산

월세액/주택임차등록

년도 2023 년 부서 전체

사번	성명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																																																																			
000001	홍길동	납입금액 1,306,800 공제금액 156,81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택</th> <th rowspan="2">임대인 성명</th> <th rowspan="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th> <th rowspan="2">주택유형</th> <th rowspan="2">계약 면적(m2)</th> <th rowspan="2">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th> <th colspan="2">임대계약기간</th> <th rowspan="2">연간 월세액</th> <th rowspan="2">공제금액</th> </tr> <tr> <th>시작</th> <th>종료</th> </tr> </thead> <tbody> <tr> <td></td> <td>서울특별시...</td> <td>2188200136</td> <td>아파트</td> <td>50</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td> <td>1992-12-05</td> <td>2022-12-31</td> <td>1,306,800</td> <td>156,816</td> </tr> </tbody> </table> 거주자간 주택임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주택임차임금은 일반(개인 대 개인)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납입금액 0 공제금액 0 1)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택</th> <th rowspan="2">대주 (貸主)</th> <th rowspan="2">주민등록번호</th> <th colspan="2">계약기간</th> <th rowspan="2">차입금 이자율</th> <th colspan="3">원리금상환액</th> <th rowspan="2">공제금액</th> </tr> <tr> <th>시작</th> <th>종료</th> <th>계</th> <th>원리금</th> <th>이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0">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td> </tr> </tbody> </table> 2)임대차 계약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택</th> <th rowspan="2">임대인 성명</th> <th rowspan="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th> <th rowspan="2">주택유형</th> <th rowspan="2">계약면적 (m2)</th> <th rowspan="2">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th> <th colspan="2">임대차계약기간</th> <th rowspan="2">전세보증금</th> </tr> <tr> <th>시작</th> <th>종료</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9">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td> </tr> </tbody> </table>	주택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임대계약기간		연간 월세액	공제금액	시작	종료		서울특별시...	2188200136	아파트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	1992-12-05	2022-12-31	1,306,800	156,816	주택	대주 (貸主)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시작	종료	계	원리금	이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계약면적 (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임대차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시작	종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임대계약기간		연간 월세액	공제금액																																																				
			시작	종료																																																																	
	서울특별시...	2188200136	아파트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	1992-12-05	2022-12-31	1,306,800	156,816																																																												
주택	대주 (貸主)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시작	종료		계	원리금	이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계약면적 (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임대차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시작	종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월세액 및 주택임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받은 사원에 추가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월세액 / 주택임차등록메뉴에서 조회 시 검색되는 사원의 월세 및 주택임차등록자료를 등록 합니다.

① 상단 납입금액 과 공제금액을 참고하여 월세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및 사업자번호는 숫자만 입력 바랍니다.)

※ 당해 연도 월세 세액 공제금액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당해 연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자녀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됨

1)금전소비대차 : 당사자가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며 작성하는 계약 문서

2) 임대차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9. 연금/저축공제자료등록

인사/급여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자료등록

년도 | 2023 년 | 부서 | 전체 |

사번	성명
000002	고길동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5,339,527

공제금액

0

행추가

삭제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①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11,526,680

공제금액

720,000

행추가

삭제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공제금액
☒	개인연금	자산운용 금융회사	030011	11,526,680	720,00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6,000,000

공제금액

2,400,000

행추가

삭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	중소기업은행	250084	6,000,000	2,400,000

중소기업창업투자 소득공제

납입금액

2,318,698

공제금액

231,869

행추가

삭제	투자일	구분	조합명(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	2022.01.01	벤처	유안타증권(동양종합금융증권)	2020208	1,200,000	120,000
☒	2021.01.01	벤처	국민은행	2440055	1,118,698	111,869

조회 시 검색되는 사원을 선택 후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자에 대해서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 ① 공제금액이 0원인 경우 등록 하지 않습니다.
- ② 납입금액과 공제금액이 조회되면 해당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등록 후 납입금액과 공제금액을 등록 합니다.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를 빼고 입력합니다.

10. 연말정산결과조회

IV 정 산 명 세	연 간 보 통 보 통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539,750	세 액 공 제	출산, 입양자 (0 명)		0			
				공제금액	539,750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0			
		공 적 보 통 보 통 공 제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0	연 간 보 통 보 통 공 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0	
					공제금액		0		연금저축		0	
					대상금액		0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세액공제액		0
				공제금액	0		세액공제액			0		
	주 택 소 득 공 제	보 통 보 통 공 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대상금액		0	보 통 보 통 공 제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세액공제액	0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0		장애통제	공제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세액공제액	0				
		주 택 자 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0	의 료 비	공제대상금액		0	
				거주자			0		세액공제액		0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교 육 비	공제대상금액		0	
				15년~29년			0		세액공제액		0	
				30년이상			0		공제대상금액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입금 대환			0		세액공제액		0	
				그 밖의 대환			0		공제대상금액		0	
				2012년 이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입금 대환		0	세액공제액		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0	기 부 금	정치 자금 기부 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0
				10년 ~15년			0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입금 대환			0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그 밖의 대환			0			세액공제액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0								

- 국세청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XPERP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과 표준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금액이 모두 0원일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표준세액공제에 13만원으로 표기

10. 연말정산결과조회

총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초과액의 40%	총급여액*40%+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15%+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5%+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2%+1,275만원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에는 연간				49,200,000			
근로소득공제				12,210,000			
근로소득금액				36,990,000			
기본공제	본인			1,500,000			
	배우자			1,500,000			
	부양가족 (5명)			7,5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			1,000,000			
	장애인 (2명)			4,000,000			
	부녀자			0			
	한부모가족			0			
연금·보험료·보험금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2,214,000		
				공제금액	2,214,000		
	공무원연금·직업연금·공보연금·공공보조금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군인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IV 정산 명세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대상금액	1,967,400	
					공제금액	1,967,400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442,800		
			공제금액		442,800		
	주택 자금 특별 소득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0		
					거주자		0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15년~29년		0	
				30년이상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이 하)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그 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1,770,512	
					그 밖의 대출		0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기부금(이월분)			0			
계					4,180,712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전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차감소득금액		15,095,288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	720,000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5,000,000
	주택마련 저축소득 공제	청약저축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231,869
	우리카드 등 사용액	6,000,00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400,00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00,000
	그 밖의 소득공제 계	14,551,86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 그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및 신용카드등

10. 연말정산결과조회

종합소득 과세표준				543,419		
산출세액				32,605		
세액감면	「소득세법」			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0		
	「조세조약」			0		
	세액감면계			0		
근로소득				17,932		
자녀		공제대상자녀 (1 명)		14,673		
		출산·입양자 (1 명)		0		
연소득계좌	과학교육인공제회법에 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5,339,527		
			세액공제액	0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3,660,473		
			세액공제액	0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167,620		
			세액공제액	0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0		
			장애·인정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6,326,160		
			세액공제액	0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26,574,485		
			세액공제액	0		
	기타	정치 1인마의의차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계				0		
표준세액공제				0		
납세조합공제				0		
주택차입금				0		
외국납부				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계				32,605		
결정세액				0		
실효세율(%)				0.0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소득세감면

(-)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납세자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간에 따라 월할계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원~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11. 정산디스켓작성

인사/급여

연말정산

정산디스켓작성

정산년도	2023	☒ 신고자구분	제출자	법인 세무대리인관리번호
정산대상	☒ 전체 ☐ 부분		사번	
재직구분	전체		퇴사일자	~
* 작성일자	2024.01.11		홈택스ID	
* 담당부서			* 담당자명	
파일구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기간코드	연간 합산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정산디스켓작성

- 재직구분 신고대상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전체 (재직자+퇴사자) / 재직 (재직자) / 퇴직자 (퇴직자)
- 작성일자,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입력합니다.
-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의료비 명세서를 선택 후
정산디스켓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 된 파일은 홈택스 로그인 후 파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신고 방법 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종합안내](#)

11. 정산디스켓작성

인기검색어 2. 연말정산간소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My홈택스 전제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당·불복·고충 제보·기타

세무대리 납세관리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일용간이용역) 근로부인 처리결과 조회

(일용간이용역) 제출내역 조회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기부금 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

과세자료 조회/삭제

과세자료 제출 현황조회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STEP 1.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제출기한이 있는 과세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및 과세자료제출 요약정보는 [STEP2.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식 선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방식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1. 기본사항 입력 > 2. 상세내역 입력 > 3. 오류검증 > 4. 과세자료 전송 업

직접작성제출방식 (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

1. 기본사항 입력 > 2. 상세내역 입력 > 3. 오류검증 > 4. 과세자료 전송 업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1. 회계프로그램변환 과세자료 작성 > 2. 프로그램실행 후 오류 검증 > 3. 과세자료 전송 업

* 원천징수의무자수는 한 파일에 500개로 제한되며, 500개 초과분은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제출
오류건수가 1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더이상 오류 검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01.전자과입변경

02.변환결과조회

03.전자파일제출

전자파일변환

유형선택

제출번호 810816-***** 제출지명 일제히

연령분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금공유권제

과세년월 2023년 제출구분 신규제출

자보한 후요 합니다.

변환대상파일선택

선택한 파일내역

NO	전자파일명	파일크기
1	C:\385262_967	10,060 Byte

처리내역

* 오류발생자수, 정상발생자수 값을 클릭하면 해당 처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일처리내역

파일이름	파일할식검증		내용검증	
	대상 납세자수	오류 납세자수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라인(줄)수	오류행목수		
C:\385262_967	1	0	1	1 (0)
	8	0		3

진행현황

* [내용검증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내용 확인후 다시 변환하세요.

파일형식검증완료 ⇒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완료 ⇒ 내용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XpERP 에서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지급명세서 파일을 홈택스에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2. 징수환차/환급금

인사/급여

연말정산

징수환차/환급금

❖ 연말정산 작업 후 차감징수세액을 급여에 반영 하는 메뉴입니다.

징수환차/환급금

조회 저장 인쇄

정산년도 2023 년 산대상 전체 부분 사번 [] - []

부서 전체 재직구분 전체 퇴직일자 [] ~ []

급여적용일 2024.02.28 일괄

삭제	사번	성명	부서	차감소득세	차감지방소득세	차감농특세	세액합계	급여적용년월
☒	000001	홍길동	관리실	-4,041,790	-404,160	0	-4,445,950	2024.02.28
☒	000002	고길동	관리실	-705,000	-70,440	0	-775,440	2024.02.28
	소계		2	-4,746,790	-474,600	0	-5,221,390	

3 급여계산 사용방법 및 예외처리 따라하기 ☒ 개인정보 표시

조회 저장 삭제 인쇄

급여년월 2024.02 2024.02.28 2023.02.28(급여) 급여구분 급여

부서 전체 계산하기

상여조정 급여복사 연차지급

선택	사번	성명	부서	급여일수	자금영역										공제영역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본급	직책수당	계급수당	연차수당	방화수당	출납수당	상여금	식대	연차수당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000001	홍길동	관리실	28	10,000,000	0	0	0	0	0	0	150,000	0	90,000	399,910	0	1,552,400	155,240
☒	000002	고길동	관리실	28	2,700,000	0	0	200,000	0	0	0	100,000	0	24,300	107,970	0	58,750	5,870

급여합계

지급총액	3,000,000	과세금액	2,700,000	비과세금액	300,000
공제총액	-578,550	소득세	58,750	지방소득세	5,870
실지급액		환급소득세	-705,000	환급지방소득세	-70,440

- 정산년도 2023년으로 조회합니다.

- 급여적용일에 급여지급일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급여적용년월에 급여지급일이 나타납니다.
- 급여계산에서 급여적용일로 급여 계산 시 환급소득세 /환급지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 급여계산하기 전 징수환차/환급금 메뉴에서 급여적용년월을 등록해주어야 급여에 반영됩니다.
- ✓ 급여계산 후 명세서를 출력하면 적용된 징수환차/환급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